

청약 체크 포인트

대구광역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입니다. 1순위 청약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.

※ 아래 내용은 단순 참고용이며,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, 청약신청 전 반드시 상세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확인을 부탁드립니다.

1순위(가점제 100%)

첫 번째!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9세 이상 **세대주**, 청약통장 가입기간 **24개월 이상**, 예치금 충족

- 단,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우선공급

구 분	더샵 수성라크에르 해당 타입	대구광역시	경상북도
전용면적 85㎡ 이하	59, 75, 84A	250만원	200만원

※ 청약저축통장의 경우, 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셔야 청약이 가능합니다.

※ 청약예치금 부족액은 모집공고일까지 충족하셔야 청약이 가능합니다.

두 번째! 세대주, 세대원 모두 과거 **5년 이내 당첨된 사실이 없는 고객**

세 번째!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 소유하신 **고객**(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)

- 가점제 100%로 가점제/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,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.

네 번째! 1순위 당해지역 -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자

1순위 기타지역 - 대구광역시 1년 미만 또는 경상북도 거주자

순위별 자격요건

순 위	청약관련 신청자격
1순위 청약자격	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 양육, 형제자매 부양) 중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자 1. 대구광역시 당해지역 :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기준 기타지역 :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기준 2. 청약통장(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) 가입 후 24개월 이상 및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3. 무주택자 및 1주택 소유자
	공급비율 - 가점제/추첨제 선택청약이 불가하며,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(가점제100%) ①가점제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우선(분양권 등 포함) ②추첨제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(‘분양권 등’포함)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자 ※ 단,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 수에서는 제외(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)
2순위	▪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 ▪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예·부금 포함)에 가입한 자

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및 산정

※ **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**을 산정(만 30세 이전 혼인시 **혼인 신고일로부터 무주택인 기간** 산정)

Ⓢ 세대별 “주민등록표상”에 등재된 “**청약신청자를 포함**”한 아래와 같이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가. 신청자와 동일세대 등재된 경우 : ①신청자의 배우자, ②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③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(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

나. 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경우 : ①신청자의 배우자, ②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③신청자의 직계비속(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

※ 주택의 공유지분을 **소유하거나 임차권 및 분양권 등(개정 시행일 이후)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** 주택 소유로 봄.

(단,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봄)

※ 무주택기간 산정시 **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무주택기간만으로 산정함**(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양도일은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제외함)

과거 주택 소유여부	만 30세 이전 결혼여부	무주택기간	비고
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분	만 30세 이전 결혼하지 않은 분	만30세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기간	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
	만 30세 이전 결혼한 분	혼인신고일 만30세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기간	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
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	만 30세 이전 결혼하지 않은 분	만30세 무주택된 일시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기간	만 30세가 된 날과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
		무주택된 일시 만30세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기간	만 30세가 된 날과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
	만 30세 이전 결혼한 분	혼인신고일 무주택된 일시 만30세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기간	혼인신고일과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
		무주택된 일시 혼인신고일 만30세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기간	혼인신고일과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

부양가족 인정기준

※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양가족 산정 시 제외(직계존속의 배우자의 경우 계모, 계부 포함)

- 인정대상 :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,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(미혼자녀,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포함) 및 직계존속
-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, 신청자의 직계비속(미혼자녀,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포함),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(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함)
- 인정기준 (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)

구 분	청약자 또는 배우자		비 고
	주민등록등본 계속 등재기간		
배우자	무조건 부양가족 인정		법정 배우자만 인정
미혼자녀	만 30세 미만	공고일 현재	기혼자녀는 무조건 불인정
	만 30세 이상	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등재	
직계존속	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등재		· 청약자의 세대주자격 필수 ·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시 배우자도 세대주자격 필수 · 주택(분양권 등 포함)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부양가족 제외

※ 유의사항 : 부양가족수는 본인 제외한 “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”을 기준으로 하며 결혼한 자녀 및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※ 재혼 배우자의 자녀(전혼배우자의 자녀)의 경우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(주민등록등본상 다른 거주지) 분리된 배우자와 등본상에 함께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볼 수 없음.

※ 재혼 청약자의 자녀(전혼자녀)의 경우 공급신청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등본상에 함께 있을 경우 부양가족 인정

▪ 부양가족 산정사례

